

김웅 / 4월+5월 / 기초GS / 8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58128	20	14	0	0	34	1	2.63%	7	38
559515	20	13.5	0	0	33.5	2	5.26%	5	
556408	18.5	13.5	0	0	32	3	7.89%	6	
558045	19	13	0	0	32	3	7.89%	4	
559617	19	13	0	0	32	3	7.89%	6	
558126	18.5	13	0	0	31.5	6	15.79%	4	
559484	19	12.5	0	0	31.5	6	15.79%	4	
548865	19	12	0	0	31	8	21.05%	7	
556305	17	14	0	0	31	8	21.05%	5	
559542	18	13	0	0	31	8	21.05%	6	
559808	18.5	12.5	0	0	31	8	21.05%	6	
562373	18	12.5	0	0	30.5	12	31.58%	7	
563386	17	13.5	0	0	30.5	12	31.58%	6	
558091	16	14	0	0	30	14	36.84%	7	
559650	19	11	0	0	30	14	36.84%	4	
551657	16	14	0	0	30	14	36.84%	7	
559642	17.5	12	0	0	29.5	17	44.74%	6	
556213	18	11	0	0	29	18	47.37%	5	
556214	18.5	10	0	0	28.5	19	50.00%	6	
558759	16.5	12	0	0	28.5	19	50.00%	4	
559777	16.5	12	0	0	28.5	19	50.00%	5	
559326	17	11	0	0	28	22	57.89%	7	
556416	16	12	0	0	28	22	57.89%	4	
558950	18	10	0	0	28	22	57.89%	5	
556418	19	8	0	0	27	25	65.79%	6	
557914	16	11	0	0	27	25	65.79%	4	
558101	14.5	12	0	0	26.5	27	71.05%	5	
559390	16	10.5	0	0	26.5	27	71.05%	5	
556483	14	12	0	0	26	29	76.32%	7	
556205	15	10.5	0	0	25.5	30	78.95%	4	
557844	14.5	11	0	0	25.5	30	78.95%	5	
559740	17.5	8	0	0	25.5	30	78.95%	5	
558672	17	8	0	0	25	33	86.84%	5	
559649	16	9	0	0	25	33	86.84%	5	
556500	17.5	7	0	0	24.5	35	92.11%	5	
556219	17.5	6.5	0	0	24	36	94.74%	4	
559619	8.5	10	0	0	18.5	37	97.37%	6	
557843	12.5	1	0	0	13.5	38	100.00%	3	

김웅/4월/기초GS/8회/1번	채점자
	이정은

1.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1

디자인보호법 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일반론 느낌으로 빈출되는 유형입니다. 조치별로 목차 분설 및 조문 병기가 중요합니다.

다들 잘 아는 내용이라 너무 힘줘서 쓸 필요는 없지만, 점수를 얻어갈 수 있도록 조문 누락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설문2

결론을 맞추는 것이 첫번째로 중요합니다. 판례와 사안포섭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대체로 잘 쓰셨습니다!!

(3) 설문3

유사판단은 실익 없으며 / 쉽게 창작이라 자유실시디자인이므로, 소권범 인용으로 마지막 결론에서 마무리 지어주는 느낌을 주면 답안인상이 좋습니다. 인용까지 결론 낸 답안은 많이 없었습니다.

2. 소결

4회와 비교할 때 다들 답안구성이 좋아졌음이 느껴집니다.

판례암기 및 조문병기 신경쓰고, 문제에서 묻는 바를 마지막에 결론 지어주는 것만 신경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웅/4월/기초GS/8회/2번	채점자
	이정은

1.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1

문는 바에 비해 분량이 커서, 이의신청관련해서 일반론 많이 써줘야합니다. 다들 잘 쓰셨습니다.

(2) 설문2

답 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답이 틀리게 되면 감점이 커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론을 정확하게 내고 답안 작성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결

배점이 클 때에는 법조문, 의의와 판례로 기본적인 내용을 쓴 후에는 사안포섭에서 목차를 나누어서 사안포섭 해주는 식으로 분량 늘리는 방법도 활용 가능합니다.

답안이 애매하게 넘치더라도 네모칸 밖으로 쓰기보다는 다음 페이지에 써주는 것이 답안 인상이 좋게 느껴집니다.

줄 양쪽 끝을 채워서 써주시는 것이 답안이 딱 찬 느낌이 듭니다. 앞뒤로 너무 많이 띄우시는 분들은 신경써주세요!

다들 힘드시겠지만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용어]

I. 선행(1)

1. 전제

이 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자가 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조치를 들고 있으므로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2. 조치 ① - 적극적권리법위확인심판 (법122)

(1) 권리·조치

당사가 사이트 분쟁을 같이 신속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권리법위 소액에 대한 공적인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2) 확인의 이익 취제

피침해권이 실제 침해하고 있지도 않은 디자인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법위 확인심판을 구한 경우 심판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당사가 사이트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 없다고 본다.

(3) 사안

디자인 등록을 받은 무은 침해 행위를 하는 선의상대로 적극적 권리법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조치권 - 민사적 조치

(1) 침해금지 청구

1) 의의·취지 (법 113①)

디자인권자 등은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 있는 자에게 침해 금지를 청구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2) 비밀디자인의 경우 (법 113②)

법 43①에 따라 비밀디자인 청구한 디자인의 경우 그 디자인에 대해 지식재산차장으로부터 증명 받은 시연을 제시해 경고한 경우가 아니면 본 청구를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 청구

1) 의의·취지 (법 115①)

디자인권자 등은 고의·과실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로 입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밀디자인의 경우 (법 116① 단서)

원칙적으로 법 116① 본문에 따라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족해되나, 비밀 디자인의 경우는 제외된다.

(3) 신용회복 청구

1) 의의·취지 (법 117)

고의·과실로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자는 디자인권자의 신용을 떨어뜨린 경우 그 회복을 위한 조치를 구할 수 있다.

2) 비밀디자인의 경우 (법 116① 단서)

아첨가지로 과실의 족재이 배제된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741)

침해로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득을 당사자 인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조치 ㉓ - 행사적 조치

(1) 침해죄 고소 (법 220)

고의로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죄 고소를 할 수 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2) 몰수 등 (법 228)

침해행위로 전한 물건 등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회복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3) 양벌규정 (법 227)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이 침해행위 한 경우 법인과 그 개인은 행위자가 아닐에도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5. 조치 ㉔ - 침해금지 가처분 (민사중행법 300)

침해행위 한 자가 있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10

II. 식권(2)

1. 음제정 -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法122)

특이 식에게 청구한 심판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인데 해당 절차에서 식이 무효의 항변을 할 수 있는 자가 음제된다.

2. 특권의 항변 가능 사유

(1) 신규성 총결의 경우

^{등록}디자인이 공지 디자인안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들의 결합안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등록 디자인의 무효사실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범위가 부정된다.

(2) 창작비효이성 총결의 경우

등록 디자인이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면 무효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3. 사안 - 주장불가

식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 디자인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어 확인대상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 하는데, 이는 무효의 항변 중 "창작비효이성 총결"인 등록 디자인에 대한 항변이다. 이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서 주장할 수 없는 항변에 해당한다

4

II. 설문(3)

1. 문제점 -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法122)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절차에서 자유식시 디자인의 항변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심판청구인적격 (法122)

'이해관계인'만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설문의 경우 그은 무언으로부터 침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심판을 청구한 이해관계 있다.

3. 자유식시디자인 항변 가능 문제

대변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 디자인 또는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득의 견함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사안

(1) 자유식시디자인 항변 기법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권리범위 확인성판에서 자유식시 디자인 항변이 가능하다.

(2)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1) 공통점

① 볼체, 배출구 등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같은 형상과 모양을 이루고 있다. ② 볼체가 원통형이다. ③ 조임볼트가 볼체 끝 부분에 링 모양으로 있고, 일직선 형태로 편평이 각하여 6개의 조임면이 형성되어 있다.

2) 차이점

① 볼체 외주면이 안쪽진 형상인지, 일직선 형상인지에 차이가 있다. ② 그로 인한 조임 볼트와 볼체 사이 단턱 형상에도, 연결 각도 측면에 차이가 있다.

3) 대비

'밸브 하우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밸브가 어떤 형상과 연결 구조를 가지는지가 그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거나 가장 중요한 원리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곡률 등의 차이는 크게 중요한 원리가 아니어서 확인대상 디자인은 비교대상 디자인 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

(가) 선별

은은 자유식시디자인 항변은 권리범위 속목을 부재할 수

있는 것이다. [결]

결론: 쉽게 창작할 수 있다. (20)

[문제-2]

J. 서문 (1)

1. 문제점 - 이의신청 (법 68①)

디자인 일부상사등록출원의 경우 부속한 권리가 등록될 여지가 커서 그러한 부속 권리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등록을 지연시키는 제도이다. 서문의 경우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2. 이의신청 대상 여부 (적극)

(1) 일부상사등록출원 대상

디자인의 형식에 따른 유품류 중 제 1류, 제 2류, 제 3류, 제 5류, 제 9류 (도장표기), 제 11류, 제 19류는 일부상사등록출원만 가능하다.

(2) 사안

'식품스낵 케이스'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는 제 9류에 속하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3. 시기적 요건 만족 여부 (적극)

(1) 시기적 요건

디자인권이 실재등록된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지난 날까지 가능하다.

(2) 사안

디자인 등록공고일이 2026.5.1이므로 이의신청은 2026.4.25부터 2026.8.1까지 가능하다. 이의신청 할 때 이의신청서만 내도 시기적절한 것은 만족하므로, 만료일인 2026.8.1 이의신청 하는 것도 가능하다.

4. 특허사의 기준

(1) 신규성 충족 (특 33① 각호)

선원의 경우 선행 디자인과 등록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신규성 충족으로 무효시킬 수 있다.

(2) 창작비용이성 충족 (특 33②)

실질 신규성 충족이 아니라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이기에 창작비용이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

5. 결론

(1) 이의신청 이유 등의 불제 환원 (특 69)

만료일에 이의신청하는 것은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 경우 이의신청 한 날 부터 30일인 2026.8.기까지 이유 등을 불제할 수 있다.

(2) 신건

신규성 또는 창작비용이성 충족을 문제삼아 이의신청 할 수 있다.

II. 실용(2)

1. 유사 판단 범위

(1) 일반 원칙 사례

디자인 사이의 유사 판단시 디자인 전체로서 대비하여 일반 수요자·구매자가 성리한 심이감을 느끼는지를 판단한다.

(2) 기본적 형상인 경우 사례

유사 판단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이 그 기능 및 해상 유지를 위해 안성되는 기본적 형상인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 채 나머지 부분으로 유사 판단한다.

2. 사안 - 취소결정

甲의 등록디자인은 '식품 수납케이스'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안성되는 기본적 형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유사 판단시 이러한 형상은 주된 대비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공동점·차이점 판단시 선해 디자인과 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창작 부담이서 중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취소결정 노 것이다. [결]

가장

7

14

